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임업·산림공익기능증진을
위한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
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금(이하 ‘임업직불금’이라 한다) 지급대상자 제외 사유 중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618호, 2026. 5. 12. 공포, 11. 13. 시행)됨에 따라, 「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제외 사유 중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을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정(안 제6조제1항, 제19조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기획예산처 협의 예정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3천700만원”을 “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3천700만원”을 “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)		제6조(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)		
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“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”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<u>3천700만원</u> 이상인 임업인을 말한다.	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</u> <u>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</u> -----.		
② (생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제19조(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)		제19조(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)		
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“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”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<u>3천700만원</u> 이상인 임업인을 말한다.	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</u> <u>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</u>		

② (생략)	여 고시하는 금액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임업직불제팀	
연 락 처	(042) 481 - 1241